	VISION	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	송우통신
	생각키움 · 마음올림 ·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		2021. 10. 19. 교무실: 543-1311 행정실: 542-1584 담당자: 교사 김태환

안녕하십니까? 송우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.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8호(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)

「도로교통법」 개정에 따라 **2021년 10월 21일부터**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·정차가 전면 금지되며, 학생의 등·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**(일반도로의 3배, 승용차 기준 12만원)**

※ 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

도로교통법[법률 제17514호, 시행 2021. 10. 21.]

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중략)

8.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

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·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제34조의2(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·제4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.

1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
 2.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
- ② 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·시간·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·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.

이에 학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·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2021. 10. 19.

송 우 초 등 학 교 장

불법 주·정차 여기는 **절대** 안됩니다!
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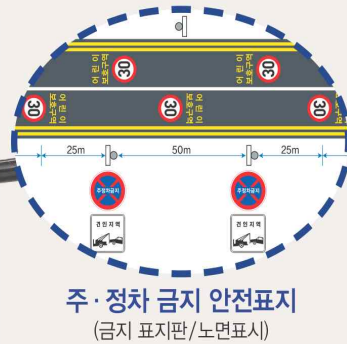


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

신고대상 구간

안전초등학교 정문

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



소화전 주변 5m

주·정차금지

주·정차금지

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교차로 모퉁이 5m

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
버스 정류소 10m

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횡단보도

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
- 신고(접수) 요건
 - ▶ 사진 자료 첨부
 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
 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 -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
-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- 과태료 부과 :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